

豫算의 移用 · 轉用 · 移越에 관한 研究

俞 焄*

<目 次>	
一. 序 論	三. 移用 · 轉用 · 移越의 規模
1. 研究의 目的	1. 移用의 規模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轉用의 規模
二. 各國의 移用 · 轉用 · 移越制度	3. 移越의 規模
1. 美國의 移用 · 轉用 · 移越	四. 移用 · 轉用 · 移越의 實態
2. 英國의 移用 · 轉用	1. 一般會計의 實態
3. 韓國의 移用 · 轉用 · 移越에 관한 規定	2. 特別會計의 實態
	五. 結 論

一. 序 論

1. 研究의 目的

豫算의 執行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目標 내지 局面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立法府의 意圖를 具現하고 立法府에서 定하여준 財政的인 限界를 엄수하는 것이며, 둘째는 豫算成立後의 與件의 變動에 適應하기 위한 伸縮性의 維持이다.

本研究에서 다룬 豫算의 移用 · 轉用 · 移越等은 豫算의 伸縮性을 維持하기 위한 方案들이다. 豫算의 伸縮性을 維持하기 위한 方案으로서는 이밖에도 豫備費, 豫算의 移替, 繼續費等이 있는데 豫備費에 관해서는 筆者가 이미 考察했으며⁽¹⁾ 豫算의 移替나 繼續費는 다음에 機會가 주어지면 다루어볼까 생각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豫算過程에 관한 研究는 적은 편이다.⁽²⁾ 豫算過程에 관한 研究가 있었다면 主

*院長,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 俞 焄, 「豫備費制度의 運營實態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第12卷 第1號, pp. 1-24.

(2) A. E. Buck, *The Budget in Governments of Today* (New York: Macmillan, 1934), Jesse Burkhead, *Government Budgeting* (New York: John Wiley, 1956)와 같은 各國의 豫算過程에 관한 研究外에 個別的인 國家의 豫算過程에 관한 研究로서는 A. E. Buck, *Financing Canadian Government* (Chicago: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1949); Arthur Smithies, *The Budgetary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cGraw-Hill, 1955), Herbert Brittain, *The British Budgetary Syste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9); Guy Load, *The French Budgetary Procoes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등이 있다.

로 豫算의 審議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며⁽³⁾ 豫算의 編成이나 豫算의 執行에 관한 研究는 더욱 적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豫算過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豫算의 執行이라해도 좋을것 같다. 豫算의 編成이나 豫算의 審議는 豫算의 執行을 위한 하나의 準備過程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本研究는 우리나라의 豫算執行過程에 있어서 豫算의 伸縮性을 높이기 위하여 活用되는 豫算의 移用·轉用·移越의 實態를 考察함으로써 豫算執行過程의 理解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1961年度부터 1975年度까지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豫算의 移用·轉用·移越을 研究對象으로 삼는다. 그러나 移用·轉用·移越의 承認에 所要되는 時日·節次等은 1975年度와 1976年度를 對象으로 하였다.

本研究는 主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研究方法에 의거하였다. 첫째로 1961年度부터 1975年度까지의 每年度 決算概要를 가지고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移用·轉用·移越의 規模를 살펴 보았다.

둘째로 一般會計 1個機關, 特別會計 1個部處를 選定하여 豫算의 移用·轉用·移越에 所要되는 時日·節次 등을 考察하였다.

세째로 各部處의 豫算擔當者 및 經濟企劃院 豫算局의 實務者들과의 面接을 통하여 移用·轉用·移越의 問題點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本研究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移用·轉用·移越에 관한 研究이며 比較研究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制度나 實態에 관해서는 皮相的인 言及밖에 하지 못했다.

二. 各國의 移用·轉用·移越制度

具體的으로 우리나라의 移用·轉用·移越의 實態에 관한 檢討에 들어가기 前에 이곳에서는 美國·英國 等 外國의 移用·轉用·移越制度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美國의 移用·轉用·移越

(a) 豫算의 移用

美國 各州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各 機關間의 豫算의 移用은 금하고 있으며, 同一機關內

(3) 代表的인 豫算審議에 관한 研究로서는 Basil Chubb, *The Control of Public Expenditure*(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Robert A. Wallace, *Congressional Control of Federal Spending*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60); Richard F. Fenno, Jr., *The Power of the Purse: Appropriations Politics in Congres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Stephen Horn, *Unused Power: The Work of the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0)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豫算審議에 관한 研究로서는 姜信澤 「韓國 國會의 豫算審議過程」 行政論叢 第12卷 第1號, pp. 170-209; 金佑鉉 「韓國의 豫算審議」 碩士學位論文(서울 大學校 行政大學院, 1963) 등이 있다.

에서의 移用도 制限하고 있다. 市支配人制를 채택하고 있는 市를 除外한 대부분의 市政府에 있어서도 이러한 制限이 부과되어 있다. 聯邦政府의 경우를 본다면 일찍부터 豫算의 移用은 原則적으로 禁止되었다. 즉 1809年の 法律은 歲出豫算이 정한 目的 以外에 經費를 사용하거나 豫算이 정한 機關間 및 項間에 相互 移用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同一機關內的 項間移用은 機關長이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서 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項間移用을 承認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會期の 議會에 報告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17年 議會는 豫算의 移用을 더 한층 制限하여 特定한 경우에 한해서 同一機關內的 項間移用만을 허용하도록 하였다.⁽⁴⁾ 이러한 傾向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대로 持續되고 있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 機關間的 豫算의 移用은 禁止되어 있으며 機關內에 있어서의 項間移用은 그해 그해의 歲出法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특수한 目的을 위해서만 許容된다.

(b) 豫算의 轉用

行政科目間的 豫算의 融通을 뜻하는 豫算의 轉用은 機關長의 自由裁量에 속한다. 루이스(Lewi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 機關은 豫算要求書에서 제시한 대로 豫算을 使用할 道義的 責任은 있으나, 그것이 法的 拘束力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⁵⁾ 美國에서는 豫算의 轉用に 關해서 中央豫算機關이 아무런 統制도 가하지 않으며 이는 각 機關長의 自由裁量에 속한다.

(c) 豫算의 移越

美國은 會計年度獨立의 原則을 준수하지 않는 國家로서 일단 議決된 豫算은 原則적으로 會計年度 終了後에도 24個月間 그 效力을 지닌다.⁽⁶⁾ 따라서 豫算의 移越은 別로 重要性을 지니지 않는다.

[表 1] 美國의 豫算議決額과 支出額의 關係(1977年度)

項	目	金 額
1977年度 議決額(①)		4,334億弗
이中 1977年度 支出豫定額(②)		2,813
1978年度以後支出豫定額(③=①-②)		1,521
過年度議決額中 未支出額(④)		5,105
이中 1977年度 支出豫定額(⑤)		1,129
1978年度 以後豫定額(⑥=④-⑤)		4,027
1977年度 支出豫定總額(⑦=②+⑤)		3,942
1978年度以後支出豫定總額(⑧=③+⑥)		5,548

資料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United States Budget in Brief, FY 1977*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53

- (4) L. D. White, *The Jeffersonians: A Study in Administrative History, 1801-1829* (New York: Macmillan, 1959), pp. 114-115
- (5) Verne B. Lewis, "Bedgetary Administration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in John M. Gaus and Leon Wolcott,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Chicago: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1940), p. 432
- (6) Buck, *The Budget in Governments of Today*, p. 256

1977年度の 경우를 가지고 이를 考察하여 본다면 表 1과 같이 1977年度 歲出豫算議決額은 4,334億弗인데 이中 1977年度 支出豫定額은 2,813億弗이며 나머지 1,521億弗은 1978年度以後에 支出될 豫定이다.

· 다른 한편 1976年度以前에 議決된 歲出豫算中 未支出額은 5,105億弗이나 되는데 이中 1977年度 支出豫定額은 1,129億弗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4,027億弗은 1978年度以後에 支出될 豫定이다. 이리하여 1977年度 支出豫定額은 3,942億弗이며 이미 議決된 歲出豫算額中 1978年度以後 支出豫定額은 5,548億弗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2. 英國의 移用·轉用

英國의 民政費의 豫算科目은 章(Class), 項(Vote), 目(Sub-Head)으로 나누어진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章은 項으로 나누어지고 項은 다시 目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豫算科目中 章은 그야말로 便宜上의 分類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法的인 效力을 지니지 않는다.⁽⁷⁾ 項은 立法科目(議決科目)이며 目은 行政科目이다.

(a) 豫算의 移用 立法科目인 項間의 融通 즉 移用은 英國에 있어서도 民政費의 경우에는 許容되지 않는다. 그러나 陸·海·空軍豫算의 경우에 있어서는 財務省의 承認을 얻어서 各軍內의 項間의 移用을 할 수 있다. 豫算의 移用에 있어서의 軍事費와 民政費間의 이와 같은 差異는 다음과 같은 原因을 지니고 있다. ① 첫째로 軍事費豫算은 本來 各軍에 一括的으로 議定해 주었던 것이다. 換言하면 議會는 陸軍에 얼마 海軍에 얼마하는 식으로 議決했으며 이를 다시 細分하여 그 用途를 規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② 둘째로 民政費豫算은 多數의 省廳에 대한 異質的인 各種의 經費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하여 陸·海·空軍豫算은 적어도 各軍內에 있어서는 比較的 同質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셋째로 世界 어느 곳에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非常事態를 위한 經費를 全部 豫算에 個別的으로 計上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⁸⁾

項間移用을 承認하였을 때에는 財務省은 이를 議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다른 歲出法을 통하여 이에 대한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該當省은 項間移用의 金額과 理由 등을 그 決算書에서 밝혀야 하며 決算委員會는 이에 관한 會計檢査院長의 報告書와 함께 決算書에 添附된 資料를 檢討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決算委員會는 該當省, 財務省 및 會計檢査院長에게 補充的인 說明을 要求한다. 決算委員會가 項間移用의 必要性에 관하여 充分히 納得이 가지 않았을 때에는 議會에 이를 報告한다.⁽⁹⁾

(b) 豫算의 轉用 行政科目인 目(Sub-head)間의 融通 즉 轉用은 軍事費뿐만 아니라 民

(7) Britain, *op. cit.*, p. 117

(8) *Ibid.*, pp. 224-225

(9) Sir Ivor Jennings, *Cabinet Government*, thir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pp. 166-167

政費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財務省의 承認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英國에서는 前述한 項間移用과 여기서 말하는 目間轉用을 통털어서 「Virement」⁽¹⁰⁾이라고 부르고 있다.⁽¹¹⁾

目間轉用은 行政科目에 대한 措置로서 法的인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事後에 會計檢査院의 檢査와 決算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財務省은 目間轉用에 대한 承認權을 慎重히 行使하고 있다. 따라서 그 金額이 巨額인 경우 또는 새로운 事業을 위한 轉用인 경우에는 決算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서 目間轉用에 대한 承認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目內的 過去 우리나라의 節에 該當하는 科目의 轉用은 各省廳이 決定할 問題이며 財務省은 이에 關與하지 않는다.⁽¹²⁾

3. 韓國의 移用·轉用·移越에 관한 規定

豫算의 移用이란 豫算이 정한 各機關·章·款·項 사이에 相互 融通하는 것을 말하며, 豫算의 轉用이란 各細項·目 사이에 相互 融通하는 것을 말한다. 過去의 財政法은 그 第26條와 第27條에 있어서 兩者를 다 流用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豫算會計法은 移用과 轉用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a) 豫算의 移用 이는 立法科目에 대한 措置이므로 原則적으로 許容되지 않으나 豫算 執行上 必要에 의하여 미리 國會의 承認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b) 豫算의 轉用 過去에는 豫算의 轉用은 반드시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4年の 豫算會計法改正에 의하여 原則적으로는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하되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는 範圍內에서는 各中央官署의 長이 裁量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었다.⁽¹³⁾

(c) 豫算의 移越 過去에는 豫算의 移越도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必要로 했으나 1974年の 豫算會計法改正에 의하여 關係條文이 改正되었다. 即 豫算의 移越은 各中央官署의 長의 裁量에 의하도록 하되 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한 경우에는 事前 制限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三. 移用·轉用·移越의 規模

1. 移用の 規模

(a) 一般會計의 移用

一般會計의 移用規模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指摘할 수 있겠다.

(10) Virement은 佛語이며 英語의 transfer에 해당된다. Virement이란 말을 財務省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0年頃이라고 한다(Brittain, *op. cit.*, p. 235 note)

(11) 過去 우리나라의 財政法도 豫算의 移用과 轉用을 통털어서 豫算의 流用이라 불렀던 것이다.

(12) Jennings, *op. cit.*, pp' 166-167

(13) 豫算會計法 第35條

(14) 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

[表 2] 一般會計의 移用推移

(單位: 千圓)

會計年度	移 用 額(A)	歲 出 額(B)	歲出에 있어서 移用이 占하는 比率(A/B) %
1961	—	50,901,835	—
1962	57,292	73,256,226	0.08
1963	276,753	59,959,306	0.46
1964	160,399	62,906,745	0.25
1965	180,257	68,225,356	0.26
1966	771,041	125,208,937	0.62
1967	416,949	167,183,761	0.25
1968	720,205	242,820,042	0.30
1969	417,529	328,226,188	0.13
1970	1,482,710	403,985,125	0.37
1971	1,662,468	491,904,022	0.34
1972	1,862,897	602,136,602	0.31
1973	2,396,372	569,992,311	0.42
1974	43,219,957	929,267,315	4.65
1975	10,456,368	1,374,375,769	0.76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첫째로 表 2와 같이 移用額이 一般會計 歲出의 4.65%(1974年度)를 차지한 해도 있으나 大體로 一般會計 歲出의 1%에 未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轉用의 경우와 달라서 豫算의 移用規模는 지극히 起伏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前述한 1974年度는 例外的인 해라고 하더라도 1962年度와 같이 一般會計 歲出의 0.08%를 차지한 해가 있는가 하면 1975年度와 같이 0.76%를 占한 해도 있다.

세째로 豫算의 移用은 지극히 不規則的이라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豫算의 轉用의 경우 一定한 傾向을 發見할 수 있는데 豫算의 移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傾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960年代를 살펴 본다면 移用과 轉用을 區別하지 않던 1961年度는 제쳐놓고라도 1962年度에는 一般會計歲出의 0.08%에 지나지 않던 移用의 規模가 1963年度에는 0.46%로 늘어났다가 1964年度에는 0.25%로 그 比率이 떨어지는 등 지극히 不規則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도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移用事由를 考察하여본 結果 公共料金の 不足과 公務員俸給의 不足額 充當을 위한 移用이 가장 많다는 것을 發見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移用은 立法科目間의 融通인 까닭에 미리 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는데 國會는 豫算의 移用을 俸給이나 公共料金の 不足과 같이 比較的 制限된 경우에 限하여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b) 特別會計의 移用

特別會計의 移用規模를 보면 大體로 一般會計와 同一한 現象을 찾아볼 수 있는데 一般會計에 비하여 移用의 規模가 작을 뿐만 아니라 起伏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表 3] 特別會計의 移用推移

(單位:千원)

會對年度	移 用 額(A)	歲 出 額(B)	歲出에 있어서 移用이 占하는 比率(A/B)
1961	—	56,460,236	—
1962	2,697	80,146,692	0.00
1963	2,000	106,548,177	0.00
1964	160,399	112,367,137	0.14
1965	22,176	130,133,222	0.02
1966	73,918	208,632,473	0.04
1967	9,645	243,204,800	0.00
1968	50,276	327,529,063	0.02
1969	410,150	503,760,818	0.08
1970	531,336	458,813,778	0.12
1971	1,489,340	496,219,007	0.30
1972	1,173,840	677,401,217	0.17
1973	3,721,504	734,225,040	0.51
1974	1,206,888	989,095,525	0.12
1975	5,841,527	1,686,340,070	0.35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表 3과 같이 1963年度에 2百萬원에 지나지 않던 特別會計의 移用이 1964年度에는 1.6億원 1965年度에 2.2億원, 1966年度에 7.4億원으로 늘어났다가 1967年度에 960萬원으로 減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1970年代에 다소 緩和되었으나 起伏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事實을 알 수 있다.

移用事由를 보면 一般會計의 경우와 같이 公務員의 俸給不足이나 公共料金の 不足에 充當하기 위한 移用이 大部分이라는 것을 發見했다.

2. 轉用의 規模

(a) 一般會計의 轉用

一般會計의 轉用規模를 前述한 移用과 比較하여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色을 들 수 있다.

첫째로 豫算의 移用보다 轉用이 規模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7年度를 例外로 한다면 一般會計의 轉用額은 恒常 一般會計 歲出의 0.5%를 上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豫算의 移用に 비하여 轉用은 起伏이 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豫算의 移用과 轉用을 區別하지 않던 1961年度를 考察에서 除外한다면 1975年度(3.4%)나 1971年度(2.18%)와 같이 다소 例外的인 會計年度도 있으나 起伏이 크지 않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表 4] 一般會計의 轉用推移

(單位: 千圓)

會計年度	轉用額(A)	歲出額(B)	歲出에 있어서 轉用이 占하는 比率(A/B)
1961	592,459	50,901,835	1.16%
1962	403,356	73,256,226	0.55
1963	299,405	59,959,306	0.50
1964	312,948	62,906,745	0.50
1965	503,692	68,225,356	0.74
1966	839,615	125,208,937	0.67
1967	809,287	167,183,761	0.48
1968	1,261,963	242,820,042	0.52
1969	2,412,972	328,226,188	0.74
1970	2,245,794	403,985,125	0.56
1971	10,708,893	491,904,022	2.18
1972	5,900,304	602,136,602	0.98
1973	6,769,471	569,992,311	1.19
1974	15,673,488	929,267,315	1.69
1975	46,749,111	1,374,375,769	3.40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表 5] 特別會計의 轉用推移

(單位: 千圓)

會計年度	轉用額(A)	歲出額(B)	歲出에 있어서 轉用이 占하는 比率(A/B)
1961	254,424	56,460,236	0.45%
1962	1,330,995	80,146,692	1.66
1963	1,094,136	106,548,177	1.03
1964	415,932	112,367,137	0.37
1965	762,195	130,133,222	0.59
1966	10,361,017	208,632,473	4.97
1967	13,406,673	243,204,800	5.51
1968	34,038,351	327,529,063	10.39
1969	7,776,769	503,760,818	1.54
1970	7,949,395	458,813,778	1.73
1971	8,109,587	496,219,007	1.63
1972	9,680,857	677,401,217	1.43
1973	11,587,887	734,225,040	1.58
1974	14,017,734	989,095,525	1.42
1975	23,046,228	1,686,340,070	1.37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세제로 移用的 경우와 달라서 轉用에 있어서는 一定한 傾向을 찾아볼 수 있다. 1962年度 부터 1970年度까지는 一般會計 轉用額이 一般會計 歲出의 0.48% 乃至 0.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71年度부터는 大體로 轉用額이 歲出額의 1%를 上廻하고 있다.

轉用事由를 본다면 前述한 移用的 경우와는 달리 지금처럼 多樣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

의 大部分의 目에 걸쳐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b) 特別會計의 轉用

特別會計의 轉用規模를 一般會計의 轉用과 比較하면서 考察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指摘할 수 있겠다.

첫째로, 一般會計의 轉用과 比較할 때 特別會計의 轉用規模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1年度, 1964年度, 1965年度와 같은 例外도 있으나 特別會計의 轉用規模는 大體로 特別會計 歲出(總計)의 1%를 超過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1961年度부터 1968年度에 이르는 期間中에는 特別會計의 轉用規模가 著히 起伏이 심하다는 것이다. 1974年度와 같이 轉用額이 特別會計 歲出의 0.37%에 지나지 않는 會計年度가 있는가 하면 1968年度와 같이 轉用額이 特別會計 歲出의 10%를 超過한 會計年度도 있다. 特히 1966年度부터 1968年度까지는 特別會計의 轉用規模가 例外的으로 컸던 것이다.

세째로, 1969年度부터 特別會計의 轉用規模가 比較的 平準化되어 特別會計 歲出의 1.37%乃至 1.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特別會計의 轉用事由도 一般會計의 轉用과 같이 多樣的이며 거의 모든 目에 걸쳐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移越의 規模

(a) 一般會計의 移越

[表 6] 一般會計의 移越推移

(單位: 千圓)

會計年度	移 越 額	豫 算 現 額	豫算現額에 있어서 移越이 占하는 比率
1961	722,610	53,430,730	1.35%
1962	586,313	74,805,624	0.78
1963	1,192,132	63,536,860	1.88
1964	279,014	64,160,716	0.43
1965	247,139	82,812,874	0.30
1966	392,587	126,385,569	0.31
1967	508,588	168,680,484	0.30
1968	478,889	245,672,376	0.19
1969	166,998	331,088,340	0.05
1970	366,185	409,856,585	0.09
1971	803,024	501,187,520	0.16
1972	922,692	610,066,026	0.15
1973	3,402,467	576,855,835	0.59
1974	4,772,357	937,996,771	0.51
1975	27,198,670	1,424,559,272	1.91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一般會計의 移越規模를 보면 表 6과 같이 轉用이나 移用보다 그 規模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豫算現額⁽¹⁵⁾에 있어서 移越額이 차지하는 比重이 0.1%에도 未達하는 1969年度나 1970年度는 例外하고 하더라도 移越額이 豫算額의 1%를 超過한 경우는 1961, 1967, 1975의 3個年度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會計年度獨立의 原則을 比較的 嚴格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1974年 12月の 豫算會計法 改正에 의하여 從前에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必要로 하던 歲出豫算移越이 各中央官署의 長의 裁量에 의하도록 하되 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한 경우에는 事前 制限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1975年度부터는 豫算의 移越에 대한 制限이 많이 緩和되게 된 것이다. 1974年度에는 豫算現額의 0.51%에 지나지 않던 豫算의 移越이 1975年度에 1.91%로 늘어난 것은 豫算會計法의 改正에 그 原因이 있는것 같으나 아직은 速斷을 不許한다.

(b) 特別會計의 移越

特別會計의 移越規模는 一般會計에 비하여 다소 크나 轉用に 비해서는 그 規模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起伏도 比較的 큰 편이어서 豫算現額의 5.15%를 차지한 年度가 있는가 하면 다음 會計年度에는 0.65%로 그 規模가 減縮되고 있다.

大體로 1960年代에 비하여 1970年代에 있어서 特別會計의 移越規模가 크다는것도 눈에 띈다

[表 7] 特別會計의 移越推移

(單位:千圓)

會計年度	移 越 額(A)	豫 定 現 額(B)	豫算現額에 있어서 移越이 占하는 比率(A/B)
1961	1,398,325	76,163,669	1.84%
1962	4,966,769	96,458,096	5.15
1963	771,251	118,512,082	0.65
1964	764,204	129,232,476	0.59
1965	546,068	143,290,340	0.38
1966	784,185	224,938,998	0.35
1967	2,171,962	268,331,771	0.81
1968	5,195,332	366,420,817	1.42
1969	7,400,340	535,833,314	1.38
1970	2,992,085	494,477,645	0.61
1971	11,060,937	531,222,151	2.08
1972	7,813,457	732,412,109	1.07
1973	9,945,330	789,905,986	1.22
1974	24,561,141	1,045,982,817	2.35
1975	23,491,771	1,786,113,093	1.32

資料: 每年度 決算概要

(15) 豫算現額이란 歲出豫額十前年度移越額十豫備費使用額十轉用等增減額을 말한다.

는 現象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4. 移用·轉用·移越의 實態

우리는 前項에서 우리나라의 移用·轉用·移越의 規模를 살펴 보았는데 本項에서는 一般會計 1個機關과 特別會計 1個部處를 選定하여 移用·轉用·移越의 實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一般會計 1個機關과 特別會計 1個部處를 選定한 것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에 移用·轉用·移越에 있어서 差異가 있을것이라고 前提한 까닭이다.

1. 一般會計의 實態

一般會計에 속하는 機關으로서 서울大學校를 選定하여 移用·轉用·移越의 實態를 살펴 보았다. 서울大學校를 選定한 것은 資料의 入手가 容易하다는 理由外에 文教部의 傘下機關인 까닭에 中央官署보다 節次가 더욱 複雜할 것이라는 假說을 가지고 出發한 까닭이다. 1975年度와 1976年度에 있어서 서울大學校의 경우 移用은 各各 1件뿐이었으므로 轉用과 移越만 考察하기로 한다.

(a) 轉用の 實態

1975年度와 1976年度の 豫算의 轉用實態를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했다.

- ① 서울大學校의 豫算의 轉用은 1975年度에 4件, 1976年度에 7件이 었다.
- ② 1975年度の 轉用은 最高 件當 115,000千원, 最少 件當 3百萬원이 었으며 件當 平均은 41,419,000원이 었다. 1976年度の 轉用은 最高 件當 60,627千원, 最少 件當 1,730千원이 었으며, 件當 平均은 26,092千원이 었다.
- ③ 轉用事由를 보면 豫想한 바와 같이 公共料金の 不足에 充當하기 위한 轉用이 가장 많

[表 8] 서울大學校 豫算轉用實態(1975-76)

(單位: 원)

年 度	金 額	承認要請日字	承 認 日 字	備 考
1975	18,677,000	1975. 7. 10	1975. 8. 7	移用 및 轉用임
	3,000,000	1975. 7. 10	1975. 9. 2	
	29,000,000	1975. 10. 12	1975. 10. 16	
	115,000,000	1975. 10. 12	1975. 12. 12	
1976	1,279,000	1976. 3. 23	1976. 4. 13	
	40,400,000	1976. 7. 10	1976. 8. 12	
	1,730,000	1976. 8. 4	1976. 8. 31	
	34,745,000	1976. 9. 15	1976. 9. 30	
	14,025,000	1976. 9. 15	1976. 10. 20	
	60,627,000	1976. 10. 28	1976. 11. 30	
	29,836,000	1976. 12. 13	1976. 12. 16	

資料: 서울大學校 提供

았으며, 다음이 俸給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한 轉用이 었다.

④ 轉用承認에 所要된 時日을 보면 가장 짧은 것이 3日, 가장 긴 것이 60日이었다. 承認에 所要된 時日은 1975年度와 1976年度間에 큰 差異가 없었다.

(b) 移越의 實態

서울大學校의 1975年度와 1976年度에 있어서의 豫算의 移越實態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했다.

[表 9] 서울大學校 豫算移越實態(1975—76) (單位: 원)

年 度	金 額	承認要請日字	承認日字	移 越 事 由
1976	86,879,000	1977. 1. 14	1977. 1. 27	工事부지내 林木伐採許可 및 砂防指定地 解除지연 氣溫急降下로 인한 工事中止
	35,685,000	1977. 1. 14	1977. 1. 27	

註 ① 1975年度에는 移越이 없었음.

② 1976年度 서울大學校 施設擴充特別會計 豫算으로 同會計의 廢止로 一般會計가 承繼.

資料: 서울大學校 提供

① 서울大學校의 豫算의 移越是 모두 事故移越이 있으며 明示移越是 한件도 없었다. 1975年度에는 한件도 없었으며, 1976年度에 2件의 事故移越이 있었다.

② 1976年度の 事故移越是 各各 86,879千원, 35,685千원이었다.

③ 移越事由를 보면 두件 다 不可避한 事故로 因하여 工事を 끝내지 못했던 경우였다.

④ 移越承認에 所要된 時日을 보면 두件 다 13日이었다.

2. 特別會計의 實態

特別會計의 實例로서 通信事業特別會計를 選定했다. 豫算의 移用은 1975年度에는 없었고 1976年度에 3件이 있었으므로 轉用과 移越의 實態만 살펴 보기로 한다.

(a) 轉用的 實態

1975年度와 1976年度에 있어서 通信事業特別會計의 轉用實態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發見했다.

① 通信事業特別會計의 轉用은 1975年度에 43件, 1976年度에 56件이었다.

② 1975年度の 轉用은 最高 件當 496,144千원, 最少 件當 891千원이 있으며, 件當 平均은 83,112千원이 었다. 1976年度の 轉用은 最高件當 565,573千원 最少 件當 200千원이 있으며 件當 平均은 72,487千원이 었다.

③ 轉用事由를 보면 一般行政機關의 경우와 달리 政府企業인 遞信部에 있어서는 一定한 傾向을 發見하기 어려운 것 같다. 損益計定の 경우를 보면 公共料金이나 車輛費의 不足에 充當하기 위한 轉用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이밖에도 旅費, 諸稅公課, 人件費의 不足에 대 처하기 위한 轉用도 적지 않다. 資本計定에 있어서는 貸地確保, 工事費確保等を 위한 轉用

[表 10] 通信事業特別會計 轉用實態(1975-76)

(單位: 圓)

年 度	金 額	承認要請日字	承 認 日 字	備 考
1975	891,000	1975. 4. 3	1975. 4. 20	損益計定
	7,600,000	自體轉用		"
	282,178,000	"		"
	243,078,000	"		"
	48,800,000	"		"
	76,343,000	"		"
	26,994,000	"		"
	1,795,000	"		"
	3,000,000	"		"
	175,751,000	"		"
	71,858,000	"		"
	15,600,000	"		"
	198,570,000	"		"
	14,000,000	"		"
	336,493,000	"		"
	71,548,000	"		"
	68,574,000	"		"
	33,769,000	"		"
	6,520,000	"		"
	170,136,000	"		"
	10,000,000	"		"
	14,799,000	"		"
	73,000,000	"		"
	7,600,000	"		"
	6,500,000	"		"
	9,689,000	"		"
	186,000,000	"		"
	23,000,000	"		"
	4,560,000	"		"
	9,587,000	"		"
	5,765,000	1975. 2. 21	1975. 3. 3	"
	9,528,000	1975. 4. 4	1975. 4. 15	"
	43,800,000	1975. 4. 21	1975. 4. 28	"
	15,000,000	1975. 4. 23	1975. 4. 28	"
	95,000,000	1975. 10. 18	1975. 10. 21	"
	15,000,000	1975. 11. 21	1975. 12. 10	"
	30,000,000	1975. 11. 21	1975. 12. 10	"
	38,505,000	1975. 11. 21	1975. 12. 10	"
	496,144,000	1975. 11. 21	1975. 12. 1	"
	46,295,000	1975. 11. 21	1975. 12. 1	"
	479,457,000	1975. 11. 21	1975. 12. 1	"
	72,000,000	1975. 11. 21	1975. 12. 21	"
	29,080,000	1975. 12. 3	1975. 12. 11	"

年 度	金 額	承認要請日字	承 認 日 字	備 考
1976	8,289,000	自體轉用		損益計定
	420,000,000	"		"
	428,437,000	1976.12. 3	1976.12.14	"
	546,115,000	自體轉用		"
	43,417,000	1976. 5.13	1976. 6. 5	"
	48,000,000	自體轉用		"
	273,000	"		"
	21,738,000	"		"
	28,466,000	"		"
	2,674,000	"		"
	2,839,000	"		"
	27,575,000	"		"
	7,239,000	"		"
	99,539,000	"		"
	17,483,000	"		"
	4,860,000	"		"
	2,585,000	1976. 2.19	1976. 2.27	"
	200,000	自體轉用		"
	2,363,000	"		"
	2,850,000	1976. 5.13	1976. 6. 5	"
	1,694,000	自體轉用		"
	1,189,000	"		"
	241,000	"		"
	2,510,000	"		"
	1,500,000	1976. 8.18	1976. 9.23	"
	1,341,000	自體轉用		"
	2,250,000	"		"
	1,143,000	"		"
	1,690,000	"		"
	1,400,000	"		"
	520,000	"		"
	1,340,000	"		"
	955,000	"		"
	43,045,000	1976.10.18	1976.11.30	資本計定
	267,243,000	"	"	"
	261,145,000	自體轉用		"
	15,000,000	"		"
	4,361,000	1976. 6.28	1976. 7.12	"
	3,284,000	自體轉用		"
	565,573,000	"		"
	51,000,000	"		"
	63,054,000	"		"
	100,000,000	"		"
	479,000,000	"		"

年 度	金 額	承認要請日字	承 認 日 字	備 考
	5,468,000	1976. 7. 5	1976. 7. 22	"
	54,546,000	自體轉用		"
	80,000,000	1976. 8. 7	1976. 9. 23	"
	169,000,000	"		"
	18,373,000	"		"
	3,482,000	"		"
	4,025,000	"		"
	46,100,000	"		"
	24,025,000	"		"
	4,025,000	"		"
	21,500,000	"		"
	37,300,000	"		"

資料：遞信部提供

이 많다.

④ 遞信部는 中央官署인 까닭에 서울大學校의 경우와 같이 일일이 承認을 받을 必要가 없으며, 企業豫算會計法에 의거하여 自體轉用이 많았다.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하는 케이스는 1975年度 轉用 43件中 14件에 지나지 않았으며, 1976年度에도 56件中 10件에 지나지 않았다. 經濟企劃院의 承認을 요하는 경우 承認에 所要된 時日을 보면 가장 짧은 것이 3日, 가장 긴 것이 46日이었다.

〔表 11〕 通信事業特別會計 豫算移越實態(1975-76)

(單位：千圓)

年 度	事 項	金 額	承 認 日 字
1975	長距離自動電話機械工事	480,436	1976. 1. 10
	서울市內局間中繼管路工事	15,860	"
	청량 6,000回線增設工事	5,000	"
	수전설비승압공사	270	"
	光化門局인입통신구축공사	69,000	"
	光化門局인입통신구축전기공사	3,786	"
	승압수전공사	710	"
	지정선로이전공사	995	"
	裡里電信電話局分室增築工事	2,054	"
	裡里電信電話局分室電氣工事	112	"
	裡里電信電話局分室消防施設工事	75	"
	裡里電信電話局分室난방공사	240	"
	自動式電話施設新設관로공사	8,915	"
	自動式電話施設케블공사	6,380	"
	유성중계소경구장시설공사	288	"
	東大邱一慶山局間중계관로공사	85,344	"
	慶州局통합케이블공사	1,431	"
	慶州局 800回線증설공사	11,593	"
	장성전신전화분실신축공사	16,279	"

年 度	事 項	金 額	承 認 日 字
	장성전신전화분실전기공사	8,348	〃
	第2佛光電話局廳舍新築工事	3,845	〃
	井邑電信電話分室廳舍新築工事	4,118	〃
	사음전신전화분실청사신축공사	2,192	〃
	여의도종합청사신축6차공사	4,912	〃
	4사이트부지정지토목공사	40,000	〃
	第2 위성통신지구국대지정지및부대공사	99,000	〃
	함백산중계소공사	21,050	〃
	전자계산소특수창고신축공사	2,520	〃
	함백산중계소배전선로시설공사	1,056	〃
	함백산중계소 840회선기계공사	19,150	〃
	함백산중계소전원공사	865	〃
	애월면통신망건설공사	4,680	〃
	시외선로대체공사	4,131	〃
	창동-의정부간관로공사	6,840	〃
1976	P.C.M.반송시설납품	10,289	1977. 1.10
	M.D.O.이동용자동교환시설납품	57,891	〃
	P.C.M.반송시설설치공사	14,089	〃
	실악동통신지하관로공사	5,609	〃
	저귀한미화공사	4,263	〃
	여귀산미화공사	6,380	〃
	중계소부속사신축공사	11,782	〃
	전리층관측소건물공사	19,562	〃
	전리층관측소선설치공사	6,700	〃
	전리층관측소배수로공사	2,900	〃
	전리층관측소올타리공사	2,839	〃
	충주우체국개축공사	2,209	〃
	금촌전신전화분실제4차공사	14,205	〃
	금촌전신전화분실정기공사	615	〃
	釜山市外 D.D.D국사중축공사	25,299	〃
	釜山市外 D.D.D 전기공사	3,392	〃
	大田기술원양성소신축공사	15,495	〃
	大田기술원양성소전기공사	23,282	〃
	금산제2위성통신지구국2차공사	34,299	〃
	금산제2위성통신지구국전기공사	4,298	〃
	면목전화국신축공사	2,696	〃
	大田전기통신기술원2차공사	3,920	〃
	안계우체국청사개축공사	8,393	〃
	남해전신전화분실위생난방공사	11,040	〃
	부천전신전화분실신축공사	4,933	〃
	공주우체국전신전화분실창고중축공사	921	〃

資料：逓信部 提供

(b) 移越의 實態

通信事業特別會計의 1975年度와 1976年度에 있어서의 移越實態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發見했다.

① 1975年度와 1976年度에 있어서 通信事業特別會計의 移越是 모두 事故移越이었으며, 明示移越是 한件도 없었다. 1975年度에 34件, 1976年度에 26件的 事故移越이 있었다.

② 1975年度の 移越是 最高 件當 480,436千원, 最少件當 75千원이 있으며 件當平均은 27,410千원이었다. 1976年度の 移越是 最高 件當, 5000,000,000원, 最少 件當 200,000원이었으며 件當平均은 11,435千원이었다.

③ 移越事由를 보면 不可避한 事故로 因하여 工事を 끝내지 못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

5. 結 論

豫算의 移用·轉用·移越是 豫算의 伸縮性を 維持하기 위한 方案들이다. 各國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이들 伸縮性を 유지하기 위한 方案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나라의 豫算의 移用·轉用·移越의 規模와 實態를 考察하였는데 移用·轉用·移越 중 가장 規模가 크고 規則的인 것이 豫算의 轉用이고 다음이 豫算의 移用이며 豫算의 移越이 가장 規模가 작다는 것을 發見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豫算制度가 아직도 會計年度獨立의 原則에 執着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이어서 우리는 一般會計 1個機關과 特別會計 1個部處를 選定하여 轉用·移越의 實態를 살펴보았는데 轉用·移越의 承認節次에 있어서 아직도 改善의 餘地가 많다는 것을 發見했다.